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59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전은수 · 박균택 · 문진석
모경중 · 박상혁 · 김영진
이강일 · 임미애 · 권향엽
강준현 · 이광희 · 장종태
박지혜 · 김 윤 · 남인순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공연장”을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연간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준과 그에 연동된 시설·안전 요건은 상당한 규모의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어서, 수용인원 100명 내외의 소규모 라이브클럽은 사실상 공연장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문제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 자체는 가능하나 관람객이 춤을 추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 결과 현행 제도는 관람객의 노래·춤 모두 허용하지 않는 일반음식점과, 유흥종사자를 두고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유흥주점영업이라

는 두 갈래만을 제시하고 있어, 라이브 공연 중 관람객이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통상적인 관람 행위조차 위법한 "춤"으로 해석되고 있음.

최근 부산의 라이브클럽에서 관람객이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은 이러한 제도 공백이 실제 폐업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드러냄.

이에 「공연법」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여 음악의 실연을 전부 또는 주로 하는 시설을 유흥업소와 구별되는 문화시설로 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유흥종사자·접객행위 등을 금지하고 안전·소음·청소·년 보호 기준을 함께 규정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전부 또는 주로 관람객에게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주류의 판매, 그 밖의 활동이 음악의 실연에 부수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유흥종사자를 두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다.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공연 중 관람객이 기립하여 관람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라.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고, 심야시간대의 소음 관리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마.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에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을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며,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사항 위반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7제1항, 제31조 및 제33조제1항).

바.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변경등록 및 폐업신고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3조제2항제1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소규모음악공연장”이란 전부 또는 주로 관람객에게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주류의 판매, 그 밖의 활동이 음악의 실연에 부수(附隨)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음악을 공중 앞에서 재생하는 자가 출연자로서 하는 공연을 포함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등)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이하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라 한다)는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연간 30일 이상 관람객에게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을 실시할 것

2.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거나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실시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규모음악공연장은 이 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본다.

④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연장”은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연 실시 일수의 산정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출연료 지급 및 입장료 수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의 결격사유)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가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유흥종사자를 두는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 유흥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가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등록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규모음악공연장의 관람 형식 등)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공연 중 관람객이 기립하여 관람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이 이루어지는 객석은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유흥시설 및 제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별도의 공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의5(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 판매)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제28조를 적용한다.

제9조의6(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의 준수사항)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는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피난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준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3. 심야시간대의 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7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제31조의 제목 중 “공연장의”를 “공연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연자나”를 “공연자,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나”로 하
며,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규모음악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제4호 중 “제9조를”을 “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6을”
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중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를 “제9조제1
항·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연장 및 소규모음악공연장의”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소규모음악공연장”이란</u> <u>전부 또는 주로 관객에게</u> <u>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u> <u>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u> <u>설로서 음식물의 조리·판매,</u> <u>주류의 판매, 그 밖의 활동이</u> <u>음악의 실연에 부수(附隨)하</u> <u>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u> <u>하는 규모 이하의 시설을 말</u> <u>한다. 이 경우 음악을 공중 앞</u> <u>에서 재생하는 자가 출연자로</u> <u>서 하는 공연을 포함한다.</u> 5. · 6. (현행과 같음) <u>제9조의2(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u> <u>록 등)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을</u> <u>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이하</u> <u>“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라</u> <u>한다)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u> <u>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u> <u>는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u> <u>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u>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연간 30일 이상 관람객에게 음악의 실연을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을 실시할 것

2. 출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거나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실시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규모 음악공연장은 이 법에 따른 공연장으로 본다.

④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연장”은 “소규모음악공연장”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소규모음악공연장의 등록,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연 실시 일수의 산정방법,

<신 설>

<신 설>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출연료 지급 및 입장료 수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의 결격사유)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가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유통종사자를 두는 경우

2.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라 유통주점영업 또는 단란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가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등록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4(소규모음악공연장의 관람 형식 등)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공연 중 관람객이 기립

<신 설>

<신 설>

하여 관람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이 이루어지는 객석은 식품위생 관련 법령에 따른 유흥시설 및 제9조의 3제1항제5호에 따른 별도의 공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9조의5(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 판매)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제28조를 적용한다.

제9조의6(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의 준수사항) ①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는 소규모음악공연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장의 안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1.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피난통로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정원의 준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3. 심야시간대의 소음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과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리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7(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규모 음악공연장의 등록 정보 및 등록 현황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공연자 또는 <u>공연장의</u> 감독)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u>공연자나</u> 공연장운영자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공연자 또는 <u>공연장 등의</u> 감독) ----- ----- ----- ----- <u>공연자, 소규모음악공연장운영자나</u>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규모
	<u>음악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u>
4. ~ 8. (생략)	4. ~ 8. (현행과 같음)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3조(행정처분)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제9조를</u> 위반한 자	4. <u>제9조, 제9조의2 또는 제9조의6을</u>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제39조(수수료) ① (생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수수료</u>를 받을 수 있다. 제43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u> 1의2. ~ 4. (생략) ③ ~ ⑤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공연장 및 소규모음악공연장의----- -----.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9조의2제1항(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1의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